

# 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## 제목 취득세(부동산) 비과세감면결정처리(\*\*\*\*\*\*\*-\*\*\*\*\*

#### 1. 지방세 감면신청 내역

(단위:원)

							`	_ ,
법인명	*****	**	****	********				
주 소	*****	취목	득원인	과세대상물건				
물건지 *******		****		신축 (임대주택)		र](m²)	건물(m²)	
			(임1				2,990.61	
과세표준			8,126	8,126,873,807				비고
vil II	الم الد خا ا	vi) △ ¬1 ¬1 (vi)	-1 -11 -11 -11	-1 Als 1 E				미 끄

	과세표준		비고			
세 목	산출세액	세율	감면(비과세)세액	차인납부액	감면비율	P1 14
취득세	*******	***	******	*	****	
농특세	*	***	*	*	****	
(감)농특	******	***	******	*	****	
교육세	*	***	*	*		
합 계	******		******	*		

### 2. 관계법령

(1) 「지방세법」 제9조【비과세】제2항 :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(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(2) 「농어촌특별세법」시행령 제4조(비과세) 제6항 5호(기부채납비 과세)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#### 3. 신청서류 검토 및 감면 처리

- (1) 신청서류 검토:
- \*\*\*\*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강남구 \*\*\*\*\*\*\*\*을 \*\*\*\*\*\*\*\*\*으로 부터 기부채납형식으로 신축부동산을 취득하여 총 취득가액 **8,126,873,807**원을 과 세표준으로 산정한 취득세를 2016. 4. 15. 감면신청하였음
- 지방세법 제9조(비과세)제②항 국가, 지방자치단체에 **귀속 또는 기부채납**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(농특세포함)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 비과세처리함.
  - (2) 감면처리 및 사후관리 : 해당사항 없음.
- 붙임 1. 지방세 비과세 감면내역(\*\*\*\*\*\*\*\*\*\*) 1부.
  - 2. 지방세 비과세 감면신청서(\*\*\*\*\*\*\*\*). 1부. 끝.

주무관	최상수	법인1팀장	김회동	세무1과장	신길호	기획경제국장	04/19 <b>김용운</b>	
협조자								
	과-7699 서울시 강남구	( - 학독로 426	)	접수 / www.ga	ngnam.go.kr	(		)
자하 02−3421		지속 N2-3423-88	93 / 91/	over 222@gangna		/ 부분곡개(6)		